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7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4. 9.

복지문화 위원회
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9.
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체육청소년과장)
- 제출일자: 2024. 9. 12.(목)
- 회부일자: 2024. 9. 12.(목)
- 검토기간: 2024. 9. 12.(목) ~ 2024. 9. 20.(금)

2. 제안이유

- (구)신당중학교 내 체육시설(신당체육센터)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위해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시설현황

시설명	소재지	규모	주요시설	운영방식	위탁기간	비고
신당체육센터	달서구 서당로 30 (신당동 1846-1)	1층(445.65㎡) 2층(803.48㎡) 3층(35㎡) 총 801.59㎡	다용도강좌실, 탁구장 등	민간 위탁	3년	(구)신당중학교 (폐교)

나. 위탁개요

○ 위탁사무

-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·시행
- 체육시설 유지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·운영에 관한 사항
- 체육시설 이용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공공체육시설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- 기타 구청장이 체육시설 사용 및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

○ 위탁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

○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·선정

4.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5. 검토의견

-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당중학교가 폐교되고, (구)신당중학교 시설 중 일부에 대해 특정 목적에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사용허가(2024. 4. 22. ~ 2029. 4. 21., 5년)를 받아 설치한 신당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신당체육센터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에 해당하고,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따라서 5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받은 시설에 대해 그 목적에 따라 운영하기 위해 운영비 등 별도의 재정적 지원 없이,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도록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과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3년의 기간 동안 위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제1항에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이 동의안에서 제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용료 징수를 위해서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을 통한 추완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
2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
3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

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90일 전까지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13조제1항 각 호에 의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. (개정 2023. 12. 11.)